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2호)
- 허성무의원·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04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2호)	1
2. 허성무의원·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04호)	2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3
가. 개요	3
나. 적용기한 삭제(임종득의원안)	6
2.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9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9
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 시 세액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폐지(임종득의원안)	14
3.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임종득의원안, 허성무·구자근의원안) ·	25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82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2. 허성무의원·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04호)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구자근의원 등 23인
- (2) 발 의 일 : 2026. 2. 24.
- (3) 회 부 일 : 2026.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가. 개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기업의 생존 및 창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창업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 유형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25~100%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동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이후 기업의 형태(창업보육, 벤처) 및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과 고용유발에 대한 감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또한, 지방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되, 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보육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개정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1994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1998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1999년	일몰 신설(2003.12.31까지)
2004년	감면기간 축소(6년 → 4년), 일몰 연장(2006.12.31까지)
2007년	일몰 연장(2009.12.31까지)
2010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추가, 일몰 연장(2012.12.31까지)
2013년	감면기간 연장(4년 → 5년), 업종 추가(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몰 연장(2015.12.31까지)
2016년	일몰 연장(2018.12.31까지)
2017년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적용 등
2018년	청년·생계형 감면율 인상, 일몰 연장(2021.12.31까지)
2019년	감면 대상 업종 변경
2021년	생계형 창업기업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 연 8,000만원 일몰 연장(2024.12.31.까지)
2024년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축소, 추가감면율 상향 감면한도(5억원) 설정 일몰 연장(2027.12.31.까지),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종료
2025년	생계형 창업기업 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 연 1억 400만원

한편,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¹⁾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감면율을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하는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4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음.

또한, 2018년부터 청년창업 및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2022년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등

터는 8,000만원 이하, 2026년부터 1억 4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중임.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①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25%p 축소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을 상향하며(고용증가율의 50% → 100%), ②감면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신규 설정하고, ③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구 분		일반 창업	청년·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위치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제외	5년간 25% 감면	5년간 75% 감면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위치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4,864억원에서 2024년 8,33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2,290	3,519	4,841	5,702	6,544	6,746
법인세	2,574	2,561	2,788	2,631	2,612	2,454
소계	4,864	6,080	7,629	8,333	9,156	9,200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적용기한 삭제(임종득의원안)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유형별 감면율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2">기본 감면</th><th rowspan="3">추가 감면</th></tr><tr><th rowspan="2">수도권 과밀억제 권역</th><th>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25%</td><td>50%</td><td rowspan="5">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td></tr><tr><td>청년·생계형**</td><td>50%</td><td>75%</td><td>100%</td></tr><tr><td>벤처기업</td><td colspan="2">50%</td></tr><tr><td>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2">50%</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2">50%</td></tr></table>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1억 400만원 이하 ☐ 감면기간: 5년 ☐ 감면 개시 기한: 사업 개시일, 벤처기업 확인일 등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시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적용기한: 2027. 12. 31.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25%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0%	75%	100%	벤처기업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0%		☐ 적용기한 삭제 ☐ 유형별 감면율: (현행과 같음) ☐ 감면기간: (현행과 같음) ☐ 감면 개시 기한: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삭제(영구화) ☐ 시행일: 2027. 1. 1.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25%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0%	75%	100%																											
벤처기업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0%																													

* 임종득의원안 2026. 2. 19. 발의(의안번호 16882)

☐ 개정안은 2027년 말 일몰 예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적인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예비창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법과 같이 일몰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예상되는 총비용 규모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상시화할 경우 예비창업자의 세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제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르면, 동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존재하고 창업기업의 투자 제고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제고 효과 및 개인사업자의 창업 초기 생존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해당 특례의 타당성,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제60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

제61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전(제60조) 및 법인본사이전(제61조)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제60조)	법인본사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영위 법인 *사업기간 불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본사를 둔 기간 불문
	이전요건	대도시→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기존공장 취득) 또는 3년(신규공장 준공)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또한,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세액감면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 3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4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사후관리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79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4년 384억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0조)	0.1	1	2	1	1	1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1조)	2	5	7	5	5	5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63조)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799 소득세 (195) 법인세 (604)	775 소득세 (141) 법인세 (634)	610 소득세 (16) 법인세 (594)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3,032	2,993	727	384	490	50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전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년간 100% + 3년 50% ¹⁾ 7년간 100% + 4년 50% ²⁾ 10년간 100% + 5년 50% ³⁾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 및 수도권 연결지역 낙후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

3) 성장추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수도권·수도권 연결지역·지방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²⁾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³⁾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⁴⁾

2)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폐지(임종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던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u>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u>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세액감면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견기업·대기업 추가 및 적용기한 폐지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현행과 같음) - 공장시설의 전부를 <u>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밖으로</u> 이전할 것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현 행			개정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u>수도권²⁾</u>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u>수도권²⁾</u>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u>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u>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 적용기한: <u>2028. 12. 31.</u>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u>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u>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삭제(영구화)</u> ○ 시행일: 2027. 1. 1.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u>수도권 밖</u>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세액감면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추가 및 적용기한 폐지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현행과 같음) - 본사를 <u>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밖</u>으로 이전할 것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업종요건: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²⁾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 적용기한: 2028. 12. 31.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삭제(영구화) ○ 시행일: 2027. 1. 1.		

* 임종득의원안 2026. 2. 19. 발의(의안번호 16882)

□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① 현행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추가하고, ② 현행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을 추가하며, ③ 2028년 일몰 예정인 위 2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인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며,⁵⁾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2026년 3월 기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한편,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 이전일 이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과 동일하게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와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2028년 말 일몰 예정인데, 2개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영구적인 조세특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임.

첫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지 역	2022	2023	2024	최근 3년 평균
경기도	61.6	60.5	55.1	59.1
연천군	14.5	15.0	15.3	14.9
가평군	16.8	20.5	18.3	18.5
인천광역시	51.9	48.8	45.7	48.8
강화군	12.1	12.7	11.4	12.1
옹진군	9.3	11.1	11.1	10.5

주: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인구수 추이]

(단위: 명)

지 역	2022	2023	2024	최근 3년 평균
경기도	13,589,432	13,630,821	13,694,685	13,638,313
연천군	42,062	41,584	40,866	41,504
가평군	62,150	62,302	62,527	62,326
인천광역시	2,967,314	2,997,410	3,021,010	2,995,245
강화군	69,803	69,005	69,402	69,403
옹진군	20,613	20,377	19,996	20,329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현행 제도는 이전한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비례하여 감면한도가 정해지므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성과(투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⁶⁾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⁷⁾

넷째, 기업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인 반면, 현행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통상 3년마다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용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

6)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7)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공장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1,584개의 이전 현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⁸⁾ 경기도가 1,1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206개, 충청남도 85개, 충청북도 56개 순으로 나타나 공장 이전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⁹⁾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8) 당초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이 수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 이후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둘째, 현행 제도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은¹⁰⁾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을 세액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및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등 내국인이 공장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경우 공장시설 이전 시 본사 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

셋째, 개정안은 공장이전 세액감면과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인데,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해당 특례의 타당성,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공장이전 세액감면 및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음.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이외에도 제63조제2항제3호 등 연계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 수정이 필요함.

3.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임종득의원안, 허성무·구자근의원안)

현 행	임종득의원안	허성무·구자근의원안
□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안 제63조의4)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안 제64조의4)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법인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정)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
	○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임종득의원안) 또는 비수도권 지역(허성무·구자근의원안)에 소재한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동 조세특례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일: 2027. 1. 1.(임종득의원안), 공포 후 6개월(허성무·구자근의원안)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 임종득의원안 2026. 2. 194. 제출(의안번호 16882), 허성무·구자근의원안 2026. 2. 24. 제출(의안번호 17004)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

간별 500만원 한도)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임종득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허성무·구자근의원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개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개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¹⁾	3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2개
경기	가평군, 연천군	2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개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개
합 계		89개

1) 2021년 지정 이후,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함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2024.7.27.변경고시)

□ 개정안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해당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주거 이동사유를 볼 때 2011년에 비해 2021년 청년들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이 높

아졌고¹²⁾, 20~24세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 정착하는 시기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¹³⁾ 이에 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배치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들의 기대소득이 상향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전체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취업자에 대하여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람까지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규모의 월평균 임금은 약 420.5만원인데 비해 대규모 기업인

12) 청년(20대~30대) 가구 중 수도권 전입 사유중 일자리의 비중은 20대 남성(20~24세) 41.4%, (25~29세) 48.0%

13)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 2022.1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약 647.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약 226.7만원으로 최근 5년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처럼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외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까지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 임금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규모(A)	3,689	3,869	3,966	4,079	4,205
300인 이상 사업체(B)	5,582	5,922	6,071	6,220	6,472
격차(B-A)	1,893	2,053	2,105	2,141	2,267

자료: 각 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둘째, 현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은 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내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2026년 기준)]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셋째, 개정안을 통한 세액공제한도의 확대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자의 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구직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입사유 중 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직업, 교육, 주거환경 등 기타 다양한 사유가 전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가 수도권 거주를 포기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소개 기업에 취업할 정도의 유인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2025년)]

(단위: 명)

전입 사유	주택	가족	직업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명수	2,064,695	1,583,687	1,309,531	365,786	321,512	67,173	405,400

주: 전국 총전입 기준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넷째, 허성무·구자근의원안은 취업자별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후 언제까지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참고로, 임종득의원안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섯째, 임종득의원안은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몰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몰기한을 규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며, 일몰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